

화남일반산업단지 공고 제2026-02호

화남일반산업단지 환지처분공고

경기도고시 제2002-165호(2002.06.26) 실시계획인가, 경기도고시 제2025-157호(2026.01.16)로 변경 승인·고시하고, 경기도고시 제2026-1690호(2026.06.19)로 준공인가, 공고된 화남일반산업단지를 「도시개발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를 하며, 지구내 환지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환지처분내역을 개별 통보하고, 미수령 된 환지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공고의 내용으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.

2026년 7월 / 일

화남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: 우성스틸 대표 고 선 우



1. 사업의 명칭 : 화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
2. 사업시행자의 성명·주소
가. 성 명 : 우성스틸 대표 고 선 우
나. 주 소 :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송교리 42-66
(화남일반산업단지 5블럭 1로트)
3. 사업시행 면적 : 149,192.1㎡
4. 공사완료 공고일 : 2026년 06월 19일
5. 사업 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(2002. 06. 26)~환지처분 공고일(2026. 7 . 1)
6. 환지처분일 : 2026년 7월 1 일
7. 환지청산금 정산내역

구 분		수 입	지 출	비 고
계		153,104,000	153,104,000	-
일 반 환 지	과 도 금 액	153,104,000	-	처분 공고 이후 확정
	부 족 금 액	-	153,104,000	-
금 전	청 산	-	-	-

8. 기타사항

- 가. 환지처분공고로 종전의 토지는 환지처분조서와 같이 변경되며, 도시개발법 제42조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.
- 나. 환지처분 공고 이후 지적공부(토지대장 및 지적도)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새로 이되는 확정지번으로 발급되며, 지적공부정리 절차에 따라 환지등기촉탁은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다. 환지처분 통지서는 개별 등기우편으로 등기상 주소로 송달하오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송달받지 못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.

라. 관계도서 열람 및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화남공단로 65-8 화남일반산업단지 시행자 우성스틸(031-357-8270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